

# 월간 주요 이슈

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(2023. 1. 31.)

## 일부 차량용 온열시트 안전확인 신고 의무 미준수

### - 안전인증 · 안전확인신고 ·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점검 강화할 계획 -

-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· 판매 중인 차량용 온열제품\* 13개에 대한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, 일부 제품이 안전확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\*차량용 온열시트 10개, 온열 핸들 커버 3개

- 차량용 온열시트는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에 따른 ‘안전확인’ 대상 전기용품으로 해당 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출고 또는 통관 전 안전확인 시험기관에서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임을 모델별로 확인한 후 이를 안전인증 기관에 신고해야 함.

※온열 핸들 커버는 안전관리 대상 제품에 해당하지 않음.

- 차량용 온열시트 10개 제품 중 4개는 안전확인 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, 특히 이 중 1개 제품은 전자파 관련 인증\*을 안전확인신고로 허위 표시해 소비자가 인증 제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음

\*과학기술정보통신부(국립전파연구원)에서 시행하는 ‘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제도’

- 온열시트 10개 제품은 모두 최대온도가 50°C 이하로 법정기준을 충족하였으며, 안전기준이 없는 온열 핸들 커버 3개의 경우도 시험결과 온도상승 값이 50K\* 이내로 나타나 준용기준에 적합

\*K(온도상승값) : 측정 부분의 최대온도( $t_2$ )에서 주위온도( $t_1$ )를 뺀 절대값( $K = t_{12} - t_1$ )( $t_1$  기준은 25°C 미만으로 설정)

- 「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\*」을 준용하여 유해물질 함유량을 측정한 결과, 조사대상 13개 제품 중 차량용 온열시트 2개 제품(15.4%)의 표면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(DEHP)와 납(PB)이 검출되었다.

\*차량용 온열시트와 온열 핸들 커버의 경우 동 법의 유해물질 사용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.

-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확인 신고를 누락하거나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을 수입 · 판매한 사업자에게 판매 중지 및 품질개선을 권고하는 한편, 통신판매 사업자에게는 사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해당 제품의 판매차단을 요청했다.

- 국가기술표준원에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안전확인 미신고 업체에 대한 시정조치와 함께 안전관리 대상 제품에 대한 안전인증 · 안전확인신고 ·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점검 강화를 요청했다.